

# 복무규정

제	정 2005. 03. 21.
개	정 2006. 12. 27.
개	정 2007. 12. 21.
개	정 2008. 10. 14.
개	정 2015. 03. 27.
개	정 2015. 10. 12.
개	정 2018. 08. 29.
개	정 2019. 02. 01.
개	정 2019. 12. 26.
개	정 2020. 05. 28.
개	정 2020. 12. 24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전북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10.12.>

**제2조(직책 완수의 의무)** 직원은 연구원의 사명을 명심하고 관계법령, 정관,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며, 상사의 직무상의 지시를 받아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직책을 완수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친절·공정의 의무)** 직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.

**제4조(품위 유지의 의무)**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**제5조(비밀 엄수의 의무)** 직원은 직무상 지득한 사항을 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, 퇴직 후에도 또한 같다.

**제6조(직장이탈 금지)**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.

**제7조(수뢰 금지)** ①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, 사례,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.

②직원은 직무상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,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.

**제8조(겸직 등의 금지)**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1. 타 기관의 용역 또는 자문 행위
2. 대학 등의 출강
3. 학술대회 등에서 본 연구원을 대표하는 발표 및 토론
4.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본인의 개인 명의로 발표하는 행위
5. 기타 다른 직을 겸하는 행위

**제9조(정치활동의 금지)** ①〈개정 2015.3.27.〉〈삭제 2019.12.26.〉

②〈개정 2015.3.27.〉〈삭제 2019.12.26.〉

**제9조의2(상시점검)** 원장은 복무규정에서 명시하는 의무 및 금지사항에 대해 상시 점검해야 한다. 〈개정 2015.3.27.〉

**제10조(집단행위의 금지)** 〈삭제 2019.12.26.〉

**제11조(위임전결 사항)**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는 위임 전결 규칙에 의한다.

## 제2장 근무

**제12조(근무시간)** ①직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.

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 〈개정 2006.12.27.〉

③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연근무제 실시 등 근무시간 및 근무 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〈개정 2015.3.27.〉

④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,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

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.

**제13조(결근)** 직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2조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 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당일 정오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,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.

**제14조(출장)**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.

②출장 직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당직근무)** ①원장은 소속 직원에게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, 도난,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, 숙직 등의 당직 근무를 명할 수 있다.

②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,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당직 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, 음주 등 기타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.

④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당직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16조(사무인계)** ①해직된 직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임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한도 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②직원이 전보, 퇴직 또는 휴직할 때에는 그 담당업무와 보관문서, 비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상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, 소속 상사의 확인을 받아 사무인계서 1통을 주관 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출근명령)**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휴일 또는 휴직 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.

## 제3장 휴일 · 휴가

**제18조(휴일)**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.

1. 일요일
2. 국경일
3. 기타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휴일
4. 연구원 창립 기념일
5. 근로자의 날

**제19조(휴가의 종류)**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, 병가, 공가, 청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.

**제20조(연차휴가)** 직원의 연차휴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 <개정 2007.12.21. >
2.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자 중 8할 이상 근무한자는 15일 <개정 2007.12.21. >
3. 근무기간이 3년 이상 근무한자는 1년간 8할 이상 근무한자의 휴가일 수 15일에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며, 이 경우 휴가의 총 일수는 가산휴가를 포함 25일 한도로 함 <개정 2007.12.21. >

**제21조(연차휴가의 허가)**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 허가 한다. 다만, 연구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②원장은 연차휴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업무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한다.

③연차휴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

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 연차휴가에 갈음할 수 있다.

⑤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, 반일 연차 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.

**제22조(연차휴가 일수에서의 공제)** ①결근일수, 휴직일수, 정직일수 및 직위 해제일수는 이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.

②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병가 또는 휴직한 경우에는 이를 연차 휴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

**제23조(병가)** ①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1.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 불능일 때
2.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

②원장은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③병가일이 5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④병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
**제24조(공가)**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2.1.>

1. 병역검사나 근무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
2. 공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
3.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
4. 천재지변, 교통차단,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
5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

**제25조(청가)**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<별 표>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. 다만, 휴가지역에 따라 최소의 왕복 소요 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2.26.>

**제26조(특별휴가)** ①원장은 연구에 현저한 실적이 있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,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.

②임신 중의 여직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. 이 경우 휴가 일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여자 직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④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 (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3일)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(이하 "어린이집 등"이라 한다)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

2.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「민법」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)에 동행하는 경우 <신설 2018.8.29.〉 <개정 2019.2.1.〉

⑤만 4세 이하(매년 1월 1일 기준)의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<신설 2020.5.28.〉

⑥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,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 <신설 2020.5.28.〉 <개정 2020.12.24.〉

⑦임신 중인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 <신설 2020.5.28.〉

⑧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 직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. <신설 2020.5.28.〉

⑨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는 제2호

에,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2호의 휴가(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를 포함한다)는 제3호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단, 재직기간에 정직·직위해제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20.5.28.>

1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
2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20일
3. 재직기간 30년 이상 : 20일

**제27조(휴가기간 중의 공휴일)**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휴가 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28조(휴가 허가)** 제26조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장의 허가를 얻어 주관 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<2006.12.27.>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<2007.12.21.>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<2008.10.14.>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15.3.27.›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15.10.12.›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18.8.29.›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19.2.1.›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19.12.26.›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20.5.28.›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20.12.24.›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〈별표〉 〈개정 2008.10.14., 2019.12.26.〉

## 청 가 일 수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인	7
	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회 갑	본인 및 배우자	5
	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	1
출 산	배 우 자	10
사 망	배 우 자	7
	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	5
	직계 비속	5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, 손	3
	본인 및 배우자의 백·숙부모	3
탈 상	배 우 자	2
	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
